

의안번호	제 643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연철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7년 6월 26일

#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연철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4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6월 26일  
발의자 : 연철흙, 김학철, 박한범,  
박봉순, 이연구, 최병운,  
이숙애

## 1. 개정이유

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는 2003년 국민에게 개방되어 누적관람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명소가 되었음. 증가하는 관광객의 안전에 대비하여 의무실을 설치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의무실 설치 및 인력 배치 (안 제12조)

나.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

- 자(者) → 사람, 익일 → 다음 날, 귀책사유가 관람객에게 있지 아  
니한 → 관람객에게 귀책사유가 없는, 인정되는 → 인정하는,  
판단되는 → 판단하는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

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청남대관리사업소와 협의함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고

라. 입법예고 : 관계없음

## 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#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자는**”을 “**사람은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**수행자**”를 “**수행을 하는 사람**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“**자**”를 각각 “**사람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**자로서**”를 “**사람으로서**”로, 같은 호 및 제11호 중 “**자**”를 각각 “**사람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자는**”을 “**사람은**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**자**”를 “**사람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본문 중 “**익일**”을 각각 “**다음 날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“**귀책사유가 관람객에게 있지 아니 한**”을 “**관람객에게 귀책사유가 없는**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자는**”을 “**사람은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**자**”를 각각 “**사람**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인정되는**”을 “**인정하는**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3호 중 “**도지 사**”를 “**도지사**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**판단되는**”을 “**판단하는**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“**자가**”를 각각 “**사람이**”로 하고, 같은 조

제2항제2호 중 “인정될”을 “인정할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반환할 수 있다”를 “반환한다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한다.

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의무실 설치) ① 소장은 관람자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실을 설치한다.

② 의무실에는 응급의료를 위한 인력을 배치한다.

제13조(중전의 제12조)제1항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가”를 “사람이”로 한다.

제16조(중전의 제15조)제1항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입장료) ① (생 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</u>는 입장료를 면제한다.</p> <p>1. 국민과 외교사절 및 그 <u>수행사</u>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<u>자</u></p> <p>4. 청남대의 각종 문화행사 등에 직접 출연 또는 참여하는 <u>자</u></p> <p>5. ~ 8. (생 략)</p> <p>9.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<u>자로</u> 선 다른 방문객을 안내하는 <u>자</u></p> <p>10. (생 략)</p> <p>11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<u>자</u>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</u>는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.</p> <p>1. 충청북도민으로서 그 신분을</p>	<p>제4조(입장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/p> <p>-----<u>사람은</u>-----.</p> <p>1. -----<u>수행을</u> <u>하는 사람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u>사람</u></p> <p>4. -----</p> <p>-----<u>사람</u></p> <p>5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----- <u>사람</u> <u>으로서</u> -----<u>사람</u>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-----</p> <p>-----<u>사람</u>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u>사람은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

입증할 수 있는 자 : 단체입장료  
에 준함

2. 소장과 사전 협의하여 관광협  
약을 체결한 각종 기관 단체 및  
사업체의 행사 등에 참석한 후  
그 영수증(확인서 등)을 소지한  
개인·단체가 익일까지 입장할  
때 : 별표1의 입장요금에서 1천  
원을 할인

3.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 
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(확인  
서 등)을 소지한 개인·단체가  
익일까지 입장할 때 : 별표 1의  
입장요금에서 2천원을 할인. 단,  
단체입장 어린이 및 노인은 1천  
원 할인

④ (생략)

⑤ 이미 징수한 입장료는 반환하  
지 아니한다. 다만, 귀책사유가 관  
람객에게 있지 아니 한 경우에는  
반환하여야 한다.

제5조(입장금지 및 행위제한) ① 다  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
자는 입장을 금지 한다.

1.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

-----사람-----  
-----

2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----다음 날-----  
-----

3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다음 날-----  
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----관람객에게  
귀책사유가 없는-----  
-----

제5조(입장금지 및 행위제한) ① -  
-----  
사람은 -----.

1. -----

물품을 휴대한 자

2. 안전관리상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

② (생략)

제7조(시설 설치·운영 및 사용허가) ① 청남대의 이미지 제고 및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·운영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8조(사용료 납부 및 감면) ① (생략)

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3.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행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4. (생략)

-----사람

2. -----

-----사람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시설 설치·운영 및 사용허가) ① -----

-----인정하는-----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사용료 납부 및 감면) ①

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도지사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5.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감면  
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 
경우

제9조(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) ①

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
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  
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용허  
가 취소 또는 정지 받은 자가 사  
용허가를 신청한 경우
3.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 
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 
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

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
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 
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 
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.

1. (생략)
2.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  
유로 청남대의 시설 등의 사용  
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
3. (생략)

제10조(사용료의 반환) ① 시설 사

5. -----  
-----판단하는  
---

제9조(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)

① 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 
-----사람이-----  
-----
3. -----  
-----사람이-----  
-----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 
-----  
-----인정할-----
3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사용료의 반환) ① -----

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1조(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)

① (생략)

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소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③ (생략)

<신설>

제12조(관람료 징수) ① 소장 및 제7

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공연 및 전시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

-----  
-----  
-----반환  
한다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

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사람은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의무실 설치) ① 소장은 관

람자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실을 설치한다.

② 의무실에는 응급의료를 위한 인력을 배치한다.

제13조(관람료 징수) ① -----

-----사람은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사람이

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 
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  
료는 소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징  
수하여야 한다.

제13조 · 제14조 (생략)

제15조(상표 등의 사용) ① 청남대  
관리사업소가 등록한 상표 등을  
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 
서식의 신청서에 의거 소장의 사  
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16조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4조 · 제15조 (현행 제13조 및  
제14조와 같음)

제16조(상표 등의 사용) ① -----  
-----  
-----사람은-----  
-----  
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17조 (현행 제16조와 같음)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1. 사업개요

- 청남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의무실을 설치하고 의료인력을 배치하고자 함

#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의무실 설치를 위한 집기, 의약품 구매, 의료인력 인건비 등

### 3. 관련조문

- 안 제12조 의무실 설치와 의료인력 배치

### 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재정수반 요인: 의무실 설치 및 의약품 구매, 인력배치 등
- 나. 추계의 전제: 수시
- 다. 추계결과 : '17년도부터 향후 5년간 138,000천원 소요
- 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### 5. 연도별 비용 추계서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7년도)	2차년도 (2018년도)	3차년도 (2019년도)	4차년도 (2020년도)	5차년도 (2021년도)
세 출	138,000	30,000	27,000	27,000	27,000	27,000

### 6. 작성자 : 연철흠 의원